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71 |
|----------|-----|

2014년 12월 17일
운 영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1. 6. 유동균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 11.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유동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회에는 입법·법률사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입법·법률고문을 운영중에 있으며, 그간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제반 절차를 지원하였음.

다양한 입법·법률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이 직접 입법·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 및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의원이 입법·법률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 제2항 신설)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서울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또는 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의장이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의회의 공보실장, 각 담당관, 각 전문위원이 입법·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지만,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, 조례안을 통해 전문위원실을 경유하지 않고 의원의 입법·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최근 5년간 입법·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의뢰 실적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▶ 최근 5년간 입법·법률고문 자문의뢰 및 수행 현황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(11월말 기준)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자문의뢰건수 | 33 | 47 | 58 | 58 | 43 |
| 1인당 평균 자문건수 | 9.9 | 14.1 | 17.4 | 17.4 | 9.2 |

※ 각 건당 입법·법률고문 3명에게 자문의뢰함.

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 범위(같은 조 제2조)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
3.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. 다만,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.
4. 의회운영, 의안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5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6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입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
7.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

- 현재 전문위원 등은 입법담당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입법·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반면에, 의원에 대한 자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.
- 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하여, ‘입법·법률 고문 자문의뢰서’ 양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편의와 행정효율을 취하여 온 관행이 고착되어 왔음.
- 또한 의원이 직접 입법담당관실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, 전문위원실을 경유하도록 안내하면서 반려조치해 오에 따라 전문위원실을 경유하지 않고 의원이 필요에 따라 직접 입법담당관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임.
- 조례안에 대해 입법담당관실은 의원에게 입법·법률자문요청권을 부여할 경우,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밖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, 의뢰서 양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 범위에서 법률 자문을 하도록 업무 범위가 명확하고, 의뢰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<별표>에 양식을 신설하면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3 결 론

-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·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요청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 없다고 보임.
- 입법담당관의 업무행태와 관련하여 행정편의와 관행이 법의 취지와 목적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.
- 의회사무처 의정지원조직의 설치목적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좌에 있음을 각인하여 조직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가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인 “협의”를 “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7조(<u>협 의</u>) 의회의 공보실장, 각 담당관,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| <p>제7조(<u>운 영</u>) ① 의회의 공보실장, 각 담당관,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의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|